

국제항해 요트의 해적위험(예비) 해역 진입제한 조치 안내서



국제항해요트 해적위험 (예비)해역 진입제한조치

- 법적근거** 해적피해예방법 제12조(선원대피처)
- 적용대상** 선박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된 국제항해 요트
- 시행시기** '19. 9. 1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 위반시벌칙** 5백만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주요 용어설명



해적위험해역이란?

소말리아 인근 해적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말하며, 해적피해예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적위험예비해역이란?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말하며, 해적피해예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선원대피처란?

선원을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철재로 둘러싸인 구조로 선원들이 대피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등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피해예방에 관한 법 (해적피해예방법) 주요 내용



적용범위(제4조)

- * 위험(예비)해역을 통항하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적용
단, 아래의 선박은 제외
 - 1 500톤 미만의 화물선
 - 2 고정식 해상구조물
 - 3 국가소유 선박



교육 훈련의 실시(제13조)

- * 선박소유자 등은 소속 직원 및 선원 등에 대하여 해적피해 예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받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등의 국제항해 선박과 선원에 대하여는 위험해역 등으로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선원대피처의 설치 등(제12조)

- * 선박소유자 등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선원대피처 : 선원을 안전하게 대피 시킬 수 있는 시설물
-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않은 국제 항해선박 등에 대하여는 위험해역 등으로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외국에서 구매한 중고요트를 이용한 국제항해 절차

임시선박국적증서발급
(대한민국 영사)

임시항해검사
(정부대행검사기관)

국제항해

해적위험해역
진입금지

한국입항

택 1

선박법상
선박으로 등록
(지방해양수산청)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로 등록
(지방자치단체)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
(정부대행검사기관)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검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 정부대행기관 : 한국선급(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선박등록

외국에서 일반선박 화물선 수상레저기구 등 선박을 수입하여 항해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영사에게 「선박법」에 따라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임시
항해검사
실시

외국에서 매입한 선박이 우리나라까지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선박안전법」에 따라 정부대행 검사기관으로부터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시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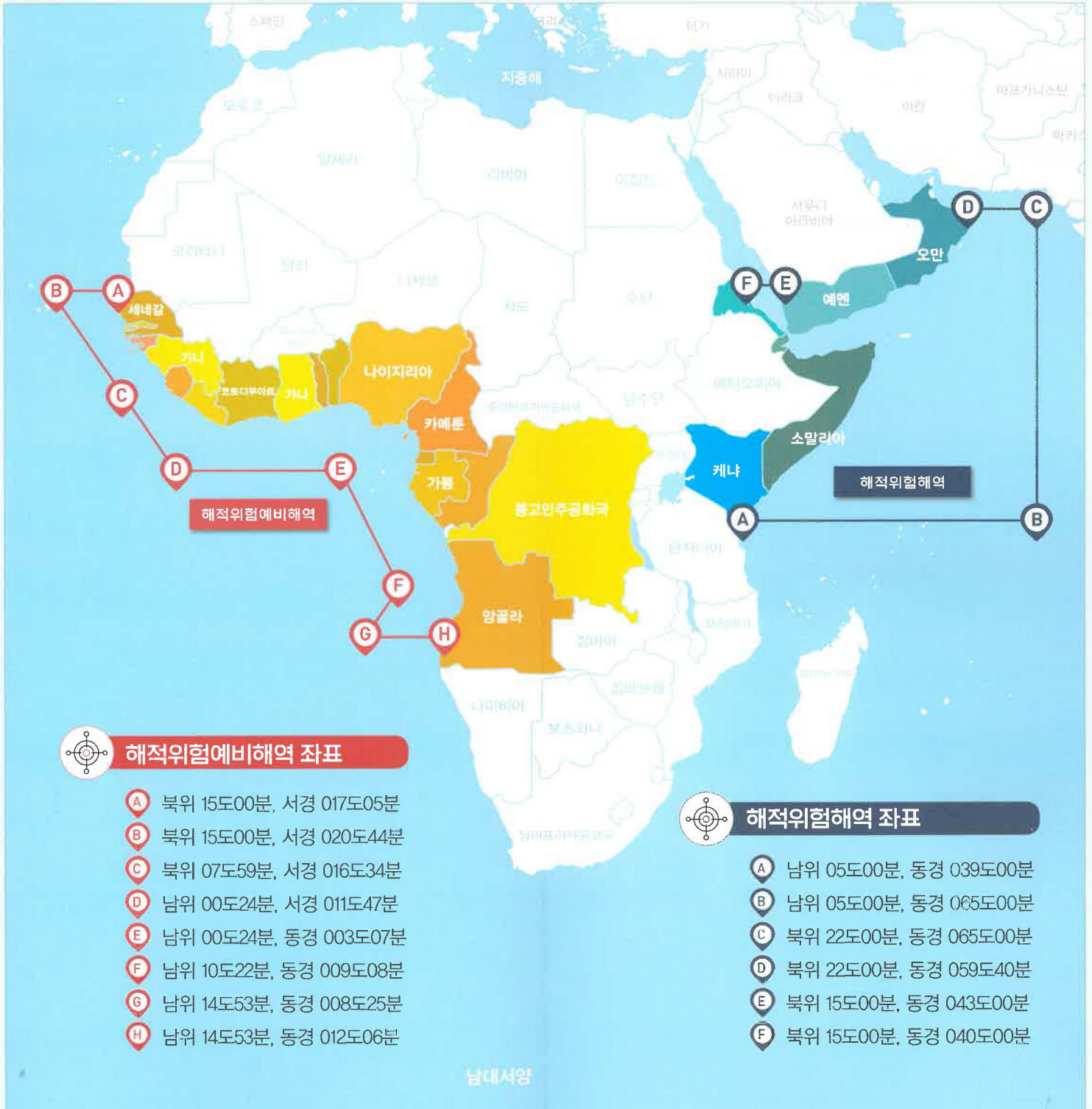
선박검사

우리나라에 입항하여 「선박법」 또는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고, 해당 법령에 따라 선박검사(또는 수상레저기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에서 구매한 요트는 화물로 수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적위험해역(소말리아 인근) 및 해적위험 예비해역(서아프리카 인근)



해적위험예비해역 좌표

- A 북위 15도00분, 서경 017도05분
- B 북위 15도00분, 서경 020도44분
- C 북위 07도59분, 서경 016도34분
- D 남위 00도24분, 서경 011도47분
- E 남위 00도24분, 동경 003도07분
- F 남위 10도22분, 동경 009도08분
- G 남위 14도53분, 동경 008도25분
- H 남위 14도53분, 동경 012도06분



해적위험해역 좌표

- A 남위 05도00분, 동경 039도00분
- B 남위 05도00분, 동경 065도00분
- C 북위 22도00분, 동경 065도00분
- D 북위 22도00분, 동경 059도40분
- E 북위 15도00분, 동경 043도00분
- F 북위 15도00분, 동경 040도0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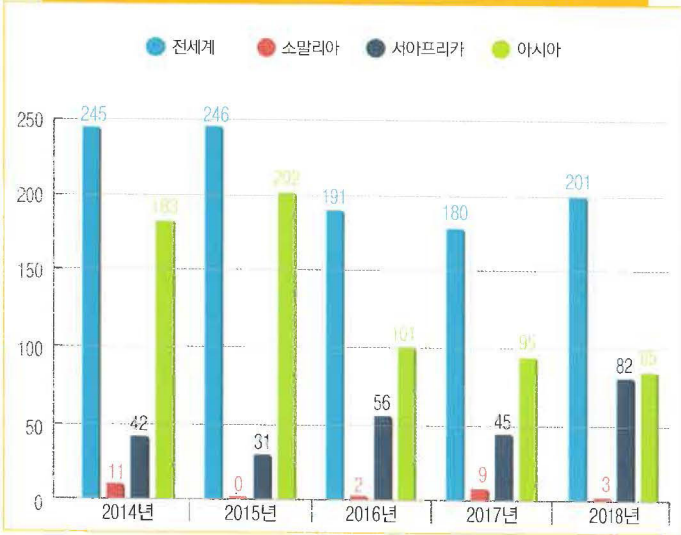


전세계 해적 해적사고 동향



전세계 해적사고 인명피해 현황

연도별 해적사고 발생 건수 (2014 ~ 2018)



연도별 해적사고 발생 건수 (2014 ~ 2018)



요트관련 주요 해적사고 사례



Tribal Kat호('11. 9. 8.)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항해중인 요트가 무장 해적에 의해서 총격을 받고, 모든 승선원들은 납치되었으며 그 중 1명의 승선원이 사망



ING호('11. 2. 24.)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항해중인 요트가 무장 해적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7명의 승선원(3명은 어린이)이 납치 되었으며 그 중 선장은 사망



Quest호('11. 2. 18.)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항해중인 요트가 무장 해적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모든 승선원들(4명)이 납치 되었으며 납치된 승선원들은 모두 사망



Mr Bean호('09. 3. 24.)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항해중인 요트가 무장 해적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선장은 사망하고, 선장의 부인은 부상 당함



요트는 특히 해적에 취약하여, 해적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와 직결됩니다.